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개요

1.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706,290	705,990	300	0.04	
일반회계	634,021	633,721	300	0.05	
특별회계	72,269	72,269	-	0.00	

2. 일반회계

▣ 세 입	-----	300백만원
○ 보조금	-----	300백만원
· 국고보조금	300	

▣ 세 출	-----	300백만원
○ 정 책 사 업	-----	300백만원
【경비성질별】		
○ 물 건 비	-----	9백만원
○ 경 상 이 전	-----	1,290백만원
○ 예 비 비 및 기타	-----	△999백만원
【기 능 별】		
○ 문 화 및 관 광	-----	1,299백만원
○ 예 비 비	-----	△999백만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의안 번호	569
----------	-----

제출년월일 : 2026. 3. 17.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국고 보조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06,29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0백만원이 증액된 634,021백만원, 특별회계는 72,26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변동없음.

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국비보조금 300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음.

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 정책사업비 300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음.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45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